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 및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정비 및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용어 변경사항 반영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함(안 제1조)

○ 관련 법률명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 제2조)

○ 옥외광고정비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3조)

○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에 진흥에 활용토록 추가

다.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6조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기획감사실-8367('17.09.13.)]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53806('17.09.29.)]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예고기간 : 2017.09.21. ~ 2017.10.1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관개선사업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작·설치 지침”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군수가 특별히”를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의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를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금의 운용관리”를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2인”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를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5조제4항제2호 중 “옥외광고업무”를 “옥외광고 업무”로,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을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제3항 중 “의사”를 “회의”로,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간사 및 수당)”을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을 “옥외광고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회계연도마다”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을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옥외광고담당과장”을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옥외광고담당”을 “옥외광고 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치 하고”를 “비치하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작성　하여야”를 “작성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2조 (기금의 재원)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①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삭 제>
2. 경관개선	2. 경관개선사업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5. --- 제작·설치 지침 ----------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

②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②---------- 예치·관리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명을 포함하여 10명 ----------.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 임명직)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2. 옥외광고 업무----------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삭 제>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 ---------- 개의(開議)하고, ----------.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 (간사) ①---------- 1명-------.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옥외광고 업무담당공무원--.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매년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
제10조 (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0조 (회계공무원)①----------.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1. ----------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2. --------- 옥외광고 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치하고 ----------.
제11조 (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 작성하여야 ------.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 ----------.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등)① (생 략)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등)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대하여는 「성주군 재무회계규칙」----------.